

2022년도 제주다양성영화 후반작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

제주특별자치도와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「2022년도 제주다양성영화 후반작업 지원사업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2. 02. 08.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장

1. 사업목적

- 제주다양성영화 후반작업 지원을 통하여 지역기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, 제주 영상 인프라 조성을 통해 우수 영화인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영상문화 도시로의 발전토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함

2. 지원개요

- 지원내용 : 제작(production)이 완료된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제주다양성영화(독립영화, 예술영화, 다큐멘터리영화 등) 대상 후반작업(Post-production) 비용 일부 지원
- 지원규모 : 총 지원금 30,000천원 내 지원

구분	편당 지원금액	비고
장편지원	최대 2천만 원 이내 차등지급	상영시간 60분 이상
단편지원	최대 5백만 원 이내 차등지급	상영시간 60분 이내

- ※ 각 부문에 해당작이 없거나 잔여예산 발생 시 예산 전액 또는 일부 통합하여 지원 가능하며, 선정편수 및 금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※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

- 지원금 사용 용도 : 모든 후반제작(편집, 녹음, DI, 음향, 자막 등) 작업비 일체 집행 가능
- 자격요건
 - 당해 사업연도('22.01.01.) 이전 주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콘텐츠제작 사업자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개인창작자(제작자, 감독, 메인 PD, 메인 작가에 한함)

- 신청 작품의 저작권자(신청인이 제작사인 경우 연출자 포트폴리오 제출)
 - ※ 도내 지역 또는 학교 출신자, 명예도민증 또는 재외도민증 소지자 포함
 - ※ 팀 구성 신청 가능하며 기업·개인별 1개 프로젝트만 신청 가능

3. 지원조건 및 참여제한

○ 지원조건

- 지원 결정 금액의 10% 이상 자부담 의무매칭
- 제작완성보증을 위하여 교부신청 전까지 지원금의 100%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(보증보험 수수료는 개인부담)
- 협약종료일('22.12.20.)까지 정산을 완료하고, 사업종료일('22.12.31.)까지 제작 완성 후 완성본 제출
 - ※ 진흥원과 사전 협의한 경우 1회(최대 12개월 이내)에 한하여 완성본 제출기한은 연장 가능하며, 이 경우 별도의 신청서와 함께 해당 기간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갱신하여 추가 제출하여야 함. (단,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하지 않음)
- 완성본 제출 후 1년 이내에 국내·외 영상, 영화제 출품 등 결과물 활용내역 제출
- 홍보자료 및 상영(방영)본의 오프닝 또는 엔딩크레딧에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작인 사실 표기



○ 신청 및 심사 제외 대상

-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신청한 경우
-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(산하 유관기관 포함)로부터 중복하여 후반작업 지원을 받은 경우
 - ※ 중복지원 불가. 단,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의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품은 신청 가능
-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2조

- (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)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
- 진흥원 지원사업의 정산금, 환수금 등이 미납 중인 경우
 - 신청일 기준 「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공모사업」에 선정된 후 완성본을 제출하지 않은 제작사(대표자), 연출자, 개인인 경우
 - ※ 신청일 이전까지 관련 사업을 완료한 후 신청 가능
 - 진흥원의 관련 규정 또는 각종 협약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제작사(대표자), 연출자, 개인인 경우
 - 기타 심사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, 의결한 작품
 - ※ 신청자 또는 선정자가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접수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4. 보조금 교부·집행·정산

○ 보조금 교부 절차 및 방법

- 보조사업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후반작업 시작일 1개월 이전 까지 진흥원과의 협약체결을 완료해야 함
 - ※ 작업이 이미 시작된 경우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협약체결
- 보조금은 협약체결 후 별도 신청에 의해 교부. 단, 보조금 교부 후 환수 사유 발생 시에는 원금 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
-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시 제반서류 및 필요한 진행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진흥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

○ 보조금 집행

- 보조사업자는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보조금을 관리하여야 하며, 진흥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
 - ※ 보조사업비는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집행 (사업비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집행 하는 방식 제외)
- 자부담금을 포함한 보조금 집행기간은 협약서 상의 수행기간(협약 일로부터 2022년 12월 20일까지)으로 함
- 진흥원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의뢰할 수 있음.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성실히 응해야 함

○ 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

- 보조사업자는 협약종료일(2022.12.20.) 이내에 진흥원이 요구하는 양식의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- 정산범위 : 진흥원 보조금 + 자부담금(보조금의 10% 이상)
- 제출서류 : 결과보고 제출공문 및 결과보고서, 보조금 관리 통장 거래내역 사본, 집행 증빙자료, 완성본 등

5. 지원절차



6.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

○ 진행일정

- 공고기간 : 2022.02.08.(화) ~ 02.28.(월)
- 접수기간 : 2022.02.14.(월) ~ 02.28.(월) 17:00까지, 15일간

○ 접수방법 : 진흥원 홈페이지(<http://ofjeju.kr>)에서 구비서류와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지정된 양식 및 요령에 따라 작성 후 메일(flyjfly@ofjeju.kr) 제출

○ 제출서류 : [별첨 1. 지원사업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] 확인 후 작성

-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
- 신청작품의 편집영상 1편 (가편집본 전체영상 제출)
- 후반작업비 예산계획서 1부
- 기타 서류 각 1부 (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인감증명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(예비)심사위원 추천표 등)

○ 접수 및 문의 :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영상산업팀

사업명	담당자	연락처	메일주소
제주다양성영화 후반작업 지원사업	장수환 선임	064-735-0623	flyjfly@ofjeju.kr

7. 선정방법 및 기준

○ 심사일정 : 2022년 3월 중 (※ 진흥원 내·외부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)

○ 심사방법

- 1차 : 제출서류 검토(미비서류 발생 시 지원 취소될 수 있음)
- 2차 : 전문가 5인 이내 구성된 심사위원 (면접)심사 및 질의응답

○ 심사기준

심사기준	심사항목	배점
작품성 및 기획력	- 작품 컨셉 및 스토리 경쟁력 - 연출 역량 및 의지	25점
기술적 완성도	- 기술역량 및 인력구성의 적절성 - 참여인력의 작품활동 실적	25점
제작방식 및 예산집행의 합리성	- 일정 및 예산 등 세부계획의 타당성 - 예산집행 계획의 현실성 및 투명성	25점
결과물 활용계획	- 결과물에 대한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	25점
합 계		100점

※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선정된 작품에 한하여 신청예산 한도 내 지원액 산정

8. 기타사항

○ 결과물 귀속

- 지식재산권의 소유는 작가 및 제작사에게 귀속함. 단, 아래의 활용 권한을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에 인정함
- 작품의 전체 혹은 일부를 공익 목적에 한하여 온·오프라인 무료 사용(단, 사용 전 상호 협의 후 진행)
- 진흥원 시설 운영(스튜디오, 영화관, 전시실 등), 제주특별자치도 및 진흥원에서 주최(관)하는 행사 및 홍보 등에 활용
- 기타 지원 취지에 따른 홍보마케팅, 영상물·책자 발간 등 진흥원 사업과 관련한 활용 등
- 시사회 개최 등 진흥원이 요청하는 관련 사업에 적극 협력
-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스틸컷의 비상업적 활용 동의(보도자료 등)

○ 유의사항

- 본 사업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, 진흥원에서 정하는 관련 규정 및 규칙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이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
- 본 사업의 신청,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, 보조사업자의 책임으로 봄
- 본 사업의 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
- 다음의 경우 지원금 환수(이자 포함),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 - 협약기한 내 제작을 중단·포기하거나 사업종료일까지 완성작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
 -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 -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 -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,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진흥원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 - 결과보고서 제출 및 보조금 정산 등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
 -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상실 또는 지원작품(작가 포함)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거나 저작권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
 - 기타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 및 규칙에서 정한 협약체결 중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
 - 위 사유 등으로 계속해서 협약유지가 어려울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지원사업 제재조치 및 이행보증보험에 의거 강제 환수조치

※ 과제가 중단된 경우, 향후 2년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참여제한

※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, 보조사업자의 책임으로 봄

※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수정공고 추진